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정(안) 설명회

2015. 11. 18



행정자치부

|| 목 차 ||

1.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1
1-Ⅰ 추진 배경	4
1-Ⅱ 기본방향 및 개념	4
1-Ⅲ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5
1-Ⅳ 향후 추진일정	10
2. 종평제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1
2-Ⅰ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총괄	15
2-Ⅱ 이행능력심사 및 종합평가 절차 ...	16
2-Ⅲ 평가분야 및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7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2015. 11. 18



행정자치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2015. 11. 18.



행정자치부

목 차

- I 추진 배경
- II 기본방향 및 개념
- III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 IV 향후 추진일정

I. 추진 배경

- 300억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하는 최저낙찰제 폐지('16.1.1)
- 국가기준 준용(최저가, 턴키, 대안입찰 등)으로 지방계약 특성 반영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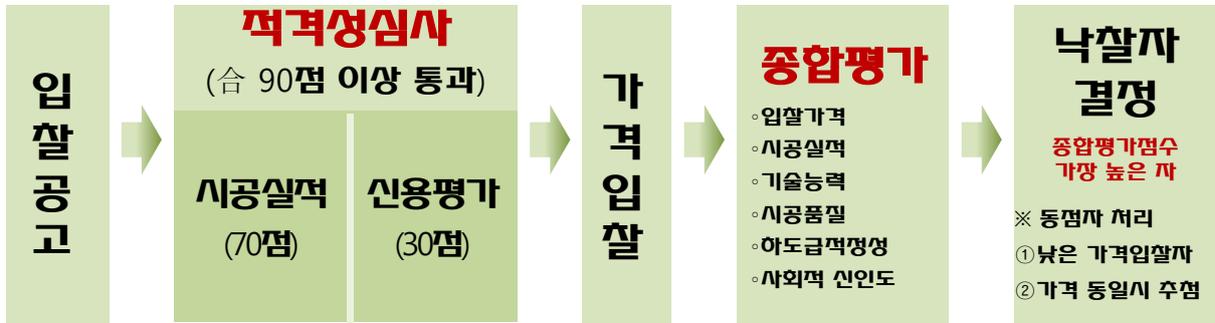
- 지방계약 특성 반영
- 적정공사비 보장 및 안전 관리 강화
- 시공역량 우수업체 우대
- 발주기관의 입찰 편의성 · 효율성 제고한 별도기준 마련

II-1. 기본 방향

구분	기 본 방 향
지방계약 특성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업체 입찰참여기회 확대 ○ 유형 및 규모별 구분 평가 ○ 하도급 적정성 평가 ○ 우수 지역업체 우대
적정 공사비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공사비 확보 → 예정가격의 최소 77% 이상 낙찰가 형성
우수시공업체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품질결과, 시공실적, 시공실적의 경과정도 평가
입찰 및 낙찰 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적격성 심사 실시 ○ 주관적 평가항목 배제

표-2. 개념

■ 개념



■ 대상공사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

표-1. 공사규모별 평가항목 및 배점 총괄

평가분야	평가 항목	공사규모별 배점			
		500억 ~ 300억이상	1,000억 ~ 500억이상	1,000억 이상	
적격성심사	이행능력평가(90점 이상) - 시공실적 (70점) - 신용평가 (30점)	Pass/Fail	Pass/Fail	Pass/Fail	
종합평가	가격입찰	50	40	35	
	시공실적	10	10	10	
	기술능력	20	25	30	
	시공품질	10	15	15	
	하도급적정성	10	10	10	
	사회적신인도 (가점:①+②+③=1.0점)	① 재해율	0.5	0.5	0.5
		② 상호협력	0.5	0.5	0.5
③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0.5	0.5	0.5	

Ⅲ-2. 적격성 심사 평가

■ 적격성 심사

■ 평가기준

- 시공실적, 신용평가 등급 → **90점 이상 Pass**

■ 평가항목 및 방법

- 시공실적 평가(70점)
 - (유형구분) I, II, III유형으로 구분 평가
 - (차등평가) 유형 및 규모별로 평가요소와 인정규모 등 차등
 - (공동도급) 공동수급체 실적 = (대표사(A)×시공비율) + (구성원(B)+(C)...)
- 신용평가 등급평가(30점)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평가

Ⅲ-3. 종합평가

■ 가격입찰

■ 평가기준

- **입찰자평균가격 근접한 자**

■ 평가산식

$$\text{점수} = A^* \times \left(1 - 2 \times \left| \frac{\text{입찰자평균가격} - \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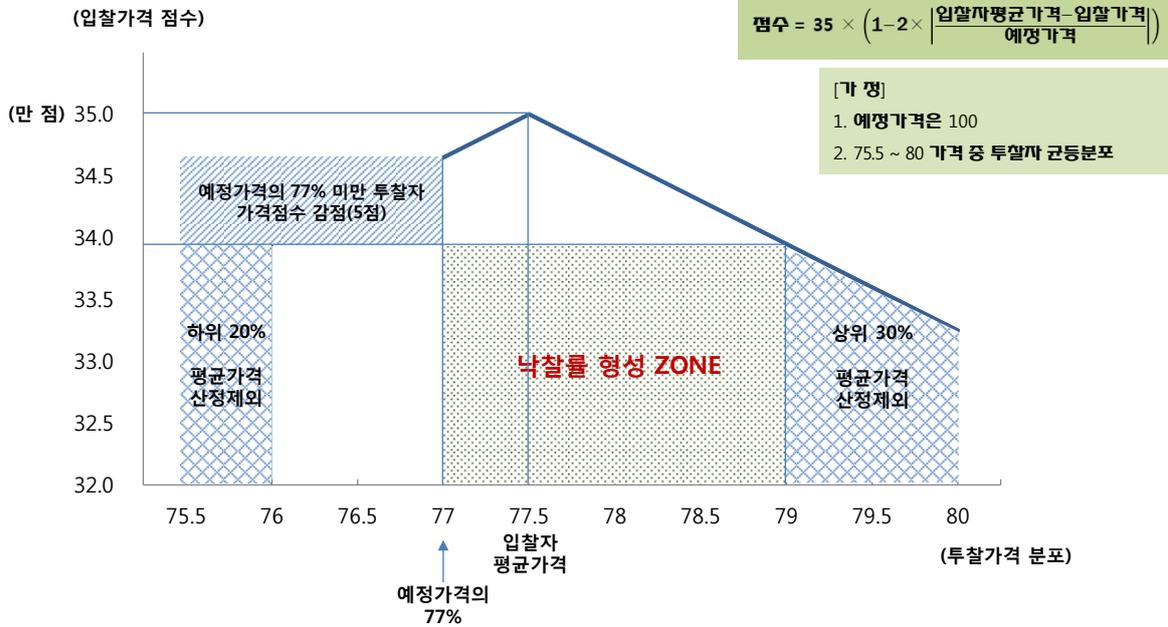
A*는 평가규모별 배점한도

■ 평가방법

- (가격점수 5점 감점) 예정가격의 77%미만 투찰자
- (평균가격 제외) 하위 20%미만, 상위 30%이상 투찰자
- * 10개사 미만 시 10%미만, 상위 40%이상 투찰자

Ⅲ-3. 종합평가

■ 가격입찰



Ⅲ-3. 종합평가

■ 시공실적

■ 평가기준

- **준공기한 경과정도에 따라 점수부여**

■ 평가방법

- (적용대상) **I, II유형**
- (평가점수) 준공실적이 최근 **5년 이내(10점)**, **10년 이내(9점)**
- (평가방법) 준공 실적이 인정범위 ·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평가기준
규모에 도달 여부

Ⅲ-3. 종합평가

■ 기술능력

■ 평가기준

- 업체보유 **기술인력, 신기술개발·활용실적,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

■ 평가항목 및 방법

- 업체보유 기술인력
 - 기술인력은 대표자는 시공비율, 구성원은 합산
 - 현장대리인은 500억 이상 고난이도 공사시 대표자 평가
- 신기술개발·활용실적 및 기술개발투자비율
 -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대표자만 평가
 - 기술개발투자비율은 구성원별 시공비율로 평가

Ⅲ-3. 종합평가

■ 시공품질

■ 평가기준

- 과거 준공 **시공품질결과 점수**를 공사 규모에 따라 차등 평가

■ 평가항목 및 방법

- (평가결과)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해 발주기관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요구하여 평가한 결과점수
- (적용대상 및 시기)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최근 3년간** 평가한 결과를 대상으로 2016.1.1.부터 적용
- (평가방법) ① 결과점수를 가중평균 및 구성원별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
② 동일공종그룹 평가 결과(X) → **동일업종** 평가
③ 동일업종(X) → '**C**'등급
- (평가등급) 90점 이상, 85점 이상, 80점 이상, 80점 미만

IV. 향후 추진일정

'15.11월 의견수렴(공청회 등)을 통한 최종안 확정

'15.12월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정

'16.1.1 시행

감사합니다 .



총평제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2015. 11. 18



행정자치부

I.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총괄	15
II. 이행능력심사 및 종합평가 절차	16
III. 평가분야 및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7
① 공통 적용사항	17
② 적격성 심사	19
1. 시공실적 평가 / 19	
2.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 / 21	
③ 종합평가	23
1. 입찰가격 평가 / 23	
2. 동일실적 경과정도 평가 / 23	
3. 기술능력 평가 / 24	
4. 시공품질 평가 / 28	
5.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평가 / 29	
6. 사회적 신인도 평가 / 30	
7. 수행능력의 결격 여부 / 32	
④ 낙찰자 결정	32
<별표>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2. 공종별 동일공사 범위	
3. 동일공종그룹 분류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총괄

□ 평가항목·공사규모별 배점기준표

평가분야	평가 항목	공사규모별 배점				
		1,000억 이상	1,000억미만 500억이상	500억미만 300억이상		
적격성심사	이행능력평가(90점 이상) - 시공실적 평가 - 신용평가 등급	Pass / Fail	Pass / Fail	Pass / Fail		
종합 평가	입찰가격	산식에 의한 평가	35	40	50	
	기술이행능력	동일실적 경과정도	준공기한 경과 정도 평가	10	10	10
		기술능력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500억 이상 고난이도 공종) 기술자 보유 신기술개발·활용실적 기술개발투자비율	30	25	20
		시공품질	시공평가 결과	15	15	10
		하도급 적정성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10	10	10
	사회적 신인도 [가점:1)+ 2)+ 3) =1점]	1)재해율		0.5	0.5	0.5
		2)상호협력		0.5	0.5	0.5
		3)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0.5	0.5	0.5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시공능력평가액	$\Delta 2 + a$	$\Delta 2 + a$	$\Delta 2 + a$		

II

이행능력심사 및 종합평가 절차

1. 계약방법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유형, 입찰참가자격, 공동도급방식, 실적의 평가기준규모·인정규모·인정범위, 평가대상 업종, 평가자료 제출방법·기한 등 *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2. 입찰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	
3. 현장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령 제15조 제4항과 제5항의 절차에 따라 현장설명
↓	
4. 적격성 심사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를 적격성 심사 신청마감일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 신청서, 심사표, 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 업체현황 조서 등
↓	
5. 제출서류에 대한 보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비·오류 등 불명확·미제출로 적격성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가능 * 보완 서류가 불명확·미비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 해당항목 제외·평가
↓	
6. 1단계 적격성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기한) 제출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불가피한 경우 3일 이내 연장 (결과통보) 심사사결과 90점 이상인 경우, 적격성 심사 통과자로 선정 * 적격여부, 이의신청 접수기한 방법 등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자체 홈페이지 등 게시 (이의신청 및 재심사) 3일 이내에 이의신청 → 7일 이내에 재심사 → 결과를 공시하거나 통지
↓	
7. 2단계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격입찰)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적격성 심사 통과자만 가격입찰에 참여 (심사신청) 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를 15일 이내에 제출 (종합심사) 입찰가격과 기술이행능력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 (결과통보) 지체없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시하거나 낙찰자에게 통지 (이의신청 및 재심사) 부적격 통지를 받은 자나 선순위 낙찰자 결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후순위 입찰자는 이의신청 → 10일 이내에 재심사 → 결과 지체 없이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 * 재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	
8. 계약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재심사 결과 낙찰자가 최종 확정되면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1 공통 적용사항

○ 심사원칙

- 적격성 심사 → 90점 이상(Pass or Fail) → 종합평가

○ 심사자료 제출과 확인방법

- 입찰공고 시 명시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조달청, 관련협회 등에 사실여부를 확인·조회

○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구성원의 시공비율(금액기준)로 평가
- 발주하는 공사가 2개 이상의 업종이 복합(복합업종)된 공사인 경우 동일실적, 5년간 업종실적, 기술자 보유, 기술개발투자비율, 시공품질평가결과는 주 업종으로 다시 산정하여 평가

※ 다만, 계약담당자는 주업종 이외의 업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종을 추가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에 이를 명시

< 복합업종의 평가항목별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

평가 항목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비고
시공실적 평가 (동일실적·업종실적)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며, 나머지 구성원은 100% 적용하여 합산 평가 *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경우 시공비율을 적용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신용평가 등급	전체 구성원 각각의 신용평가등급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전체 구성원 평가
입찰가격 평가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투찰한 가격 평가	
준공기한 경과정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동일실적 이상 준공실적(1건) 평가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500억원 이상)	대표사의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평가	대표사 100%
기술자 보유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며, 나머지 구성원은 100% 적용하여 합산 평가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신기술개발·활용실적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만 평가	대표사 100%
기술개발투자비율	구성원 각각의 기술개발투자비율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시공품질평가 결과	구성원 각각의 동일공종그룹 시공평가 결과에 시공비율을 곱한 평가점수를 합산 ('16년말까지는 대표사만 평가)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평가	
재해율	구성원 각각의 재해율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시공비율 적용
상호협력	구성원 각각의 상호협력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시공비율 적용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대표사 및 타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을 100으로 환산 평가	
수행능력 결격여부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 1인당 2점 감점	전체 구성원 평가

○ 부도업체 등의 평가방법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부터 순서대로 평가
-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 적격성심사 이전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평가
 - 적격성심사 이후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평가

○ 소수점 처리방법

- 소수점의 처리는 평가 항목별 최종단계 점수에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② 적격성 심사(90점 이상 통과) - Pass or Fail

1. 시공실적 평가(70점)

○ 공사의 유형 구분

구분	적 용 대 상	
I 유형	고난이도 공종	1)교량 2)공항 3)댐 축조 4)에너지 저장시설 5)간척공사 6)준설 7)항만 8)철도 9)지하철 10)터널공사 11)발전소 12)쓰레기소각로 13)폐수 처리장 14)하수종말처리장 15)관람·집회시설 16)전시시설 17)송전공사 18)변전공사
II 유형	일반공종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III 유형	일반공종	I, II 유형을 제외한 입찰

* 발주자가 공사유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I 유형과 II 유형의 실적 인정범위, 인정규모, 평가기준 규모 등을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

○ 유형별 평가기준

① I 유형 경우

구분	평가요소	배점	동일공사			평점
			1000억 이상	1000억 ~500억	500억 ~300억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 류의 공사실적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 규모 또는 금액 대 비	70	200% 이상	150% 이상	120% 이상	70
			165% 이상	110% 이상	90% 이상	65.8
			110% 이상	75% 이상	60% 이상	61.6
			55% 이상	40% 이상	30% 이상	57.4
			20% 이상	20% 이상	20% 이상	53.2
최근 5년간 업종 실적	입찰공고시 해당업종 명시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점 = 30 × 실적계수(실적계수의 상한은 1) ■ 실적계수 = $\frac{\text{실적합계액}}{(\text{추정가격} + \text{부가가치세}) \times 5}$ 			

② II유형 경우

구분	평가요소	배점	동일공사			평점
			1000억 이상	1000억 ~500억	500억 ~300억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 규모 또는 금액 대비	70	150% 이상	120% 이상	110% 이상	70
			120% 이상	90% 이상	80% 이상	65.8
			90% 이상	60% 이상	50% 이상	61.6
			50% 이상	30% 이상	20% 이상	57.4
			20% 이상	20% 이상	20% 이상	53.2
최근 5년간 업종 실적	입찰공고시 해당업종 명시	30	■ 평점 = 30 × 실적계수(실적계수의 상한은 1) ■ 실적계수 = $\frac{\text{실적합계액}}{(\text{추정가격}+\text{부가가치세})\times 5}$			

③ III유형 경우

구분	평가요소	배점	평 점			
			1000억 이상	1000억~500억	500억~300억	
최근 5년간 업종 실적	입찰공고시 해당업종 명시	100	■ 평점 = 100 × 실적계수(실적계수의 상한은 1) ■ 실적계수 = $\frac{\text{실적합계액}}{(\text{추정가격}+\text{부가가치세})\times A^*}$ * (1000억 이상 7, 1000억 미만 ~ 500억 이상 6, 500억 미만 ~ 300억 이상 5)			

○ 평가 방법

- 시공실적은 평가기준규모 대비 해당 업체 실적의 비율로 평가
-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업종에 참여하는 대표사는 환산시공비율(단일업종공사는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합산하여 평가,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은 환산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

$$\text{시공실적} = \frac{[\text{공동수급체 대표사(A)} \times \text{시공비율}] + [\text{공동수급체(B)} + (\text{C}) \dots]}{\text{평가기준 규모(금액)}} \times 100(\%)$$

-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

-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준공이 완료된 공사실적(규모·양)을 말하며, 인정범위를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
- ‘평가기준규모’는 발주기관이 실적을 평가하려고 정한 기준물량·규모를 말하며,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규모를 원칙으로 하되, 경쟁성을 감안하여 공사 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 가능(하향조정시 공고에 명시)
- 공사의 특성상 ‘규모·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금액’은 추정가격에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
-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의 인정범위는 [별표1] 제2절에 정한 바에 따름

○ 실적증명서 제출

-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심사서류 제출마감 일시까지 제출
 - * ‘16.5.31.일까지 입찰공고한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 가능
-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련협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심사서류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 다만, 관련협회에 연도단위(1. 1~12.31)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격성 심사 신청자가 관련협회 발급기준과 동일하게 발주자로부터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가능
- 실적인정 기준시점
 -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실적 인정
 -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확정된 5년간 실적을 연도단위(1. 1~12.31)로 인정하여 평가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30점)

-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시공비율로 곱하여 합산

○ 평가방법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
- 적격성 심사 평가 완료이전에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신평 예시

- 기업신용평가 BBB 등급인 업체가 BB등급업체와 합병한 경우
 - 입찰공고전 합병 : BB등급으로 평가(낮은 등급)
 - 적격성심사 완료전 합병 & 신규등급 없음 : BB등급으로 평가(낮은 등급)
 - 적격성심사 완료전 합병 & 신규등급 있음 : 새로운 평가등급으로 평가
 - 적격성심사 완료후 합병 : BBB등급으로 평가(소급적용 배제)

- 신용평가 결과는 관련 증명서를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직접 제출, 발주기관은 지정정보처리장치 내용을 확인하여 평가
- 신용평가 자료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외감법 적용을 받는 업체의 감사보고서가 “한정의견”, “의견거절”, “부적정” 인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 이상	A2+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9.8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6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2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0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8.8
BB0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에 준하는 등급	8.6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하	8.4
B+이하	C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에 준하는 등급 이하	0.0

③ 종합평가

1. 입찰가격 평가

○ 점수 = $A * \times \left(1 - 2 \times \left| \frac{\text{입찰자 평균가격} - \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right)$

- * A : 500억 미만 50점,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40점, 1,000억 이상 35점
- 예정가격의 77% 미만 입찰참가자는 가격점수에서 5점 감점
- 입찰참가자 중 하위 20%미만, 상위 30%이상 입찰자의 입찰금액은 입찰자평균가격 산정에서 제외
- 입찰참가자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하위 1개, 상위 40%이상 입찰자의 입찰금액은 입찰자평균가격 산정에서 제외
- 동일 입찰가격이 2개 이상 발생하여 입찰자평균가격 산정 포함 대상과 제외 대상이 혼재한 경우에는 위에서 정한 비율만 제외하고 산정
- 2개사만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자평균가격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함
- 입찰자 평균가격 산정 제외 시 소수점 이하의 입찰참가업체 수는 절사
- 입찰자평균가격 산정 시 원 단위 미만은 절사

2. 동일실적 경과정도 평가(10점)

준공실적 경과정도	평 점
A. 5년 이내 준공실적	10
B. 5년 초과 10년 이내 준공실적	9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찰공고 시 명시한 동일실적·인정범위(규모) 이상 준공실적 중 적격성 심사 시 제출한 실적으로 평가
- III유형의 경우에는 배점한도 적용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5년을 초과한 준공 실적의 경우 9점으로 평가

3. 기술능력 평가

○ 유형별 심사기준

< I 유형 중 500억 이상 공사 > 의 경우 >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	평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업체 보유 기술인력 (30점)	1)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 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3.0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3.0 2.0 1.0
	2)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평가등급 산식 별첨)	11.0	A. 4.0이상 B. 3.0이상 C. 2.0이상 D. 1.0이상	11.0 9.4 7.8 6.2
	3) 일반기술자	10.0	A. 15인 이상(12인 이상) B. 12인 이상(9인 이상) C. 10인 이상(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7.8 5.5
	4) 품질기술자(3년 이상)	3.0	A. 3인 이상(2인 이상) B. 2인 이하(1인 이하)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3.0 1.8
	5) 안전기술자 (3년 이상)	3.0	A. 3인 이상(2인 이상) B. 2인 이하(2인 이하)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3.0 1.8
나. 신기술개발·활용실적 (4점)	6) 신기술 개발	1.0	A. 2건 이상 B. 1건	1.0 0.6
	7) 신기술 활용 실적	3.0	A.50억원 이상 B.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 1억원미만	3.0 2.6 2.2 2.0
다. 최근년도 해당부문 매출액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비율 (8점)	8) 업체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기술개발 투자 비율	8.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8.0 7.6 7.2 6.8 6.4

- ‘가’목 1)의 동일공종그룹은 <별표3> 분류표를 적용
- ‘나’목은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신기술 보유 업체를 기준으로 평가
- ‘다’목의 경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평가하고 동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신기술개발 활용시 기간 만료된 경우에는 평가 제외
- 기술자 현황은 관련협회의 증명서나 전산상 자료에 의하여 평가

< 「Ⅰ 유형 중 300억 이상 500억 미만 공사」 및 「Ⅱ,Ⅲ유형 공사」 의 경우 >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	평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업체 보유 기술인력 (30점)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평가등급 산식 별첨)	14.0	A. 4.0이상	14.0
			B. 3.0이상	11.9
			C. 2.0이상	9.8
			D. 1.0이상	7.7
	2) 일반기술자	10.0	A. 15인이상(12인 이상)	10.0
			B. 12인이상(9인 이상)	7.8
			C. 10인이상(6인 이상)	5.5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3) 품질기술자(3년 이상)	3.0	A. 3인이상(2인 이상)	3.0
			B. 2인이하(1인 이하)	1.8
	4) 안전기술자 (3년 이상)	3.0	A. 3인이상(2인 이상)	3.0
			B. 2인이하(2인 이하)	1.8
나. 신기술개발·활용실적 (4점)	4) 신기술 개발	1.0	A. 2건 이상	1.0
			B. 1건	0.6
	5) 신기술 활용 실적	3.0	A.50억원 이상	3.0
			B.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2.6
			C.10억원미만 1억원이상	2.2
			D. 1억원미만	2.0
다. 최근년도 해당부문 매출액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비율 (8점)	7) 업체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기술개발 투자 비율	8.0	A.150%이상	8.0
			B.100%이상	7.6
			C. 50%이상	7.2
			D. 10%이상	6.8
			E. 10%미만	6.4

- ‘나’ 목은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신기술 보유업체를 기준으로 평가
- ‘다’목의 경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평가하고 동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신기술개발 활용시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 기술자 현황은 관련협회의 증명서나 전산상 자료에 의하여 평가

○ 기본원칙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시공참여 경력 심사방법>

-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의 시공참여 경력을 심사
- 배치예정자가 과거 동일공종그룹<별표3> 공사에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로 참여한 경력을 평가, 다만, 품질관리자와 안전관리자 경력 기간의 경우 1/2로 산정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평가에서 제외
- 낙찰자는 원칙적으로 배치예정기술자를 교체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사실을 해당업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공사에서 해당 업체의 매 위반 건당 1.0점을 감점, 다만, 두 개 이상의 공사를 동시에 낙찰 받거나, 사망, 질병, 퇴사, 해외이민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당초 배치기술자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하여 배치 가능
-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발주기관에 위반건수를 통보

<경력기술자의 심사방법>

- 일반기술자로서 당해 심사 대상공사와 동일공종의 공사현장에서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함

구 분	적 용 기 준
등급계수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경력계수	3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관리능력계수 (현장대리인의 경력)	2년미만 1.0, 2년이상 1.1, 5년이상 1.3

-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의거 설립된 『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구분을 기준으로 함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 최근연도 이전에 설립된 업체 : 등록(면허)업종에 관계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로 심사
- 최근연도 이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이나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 : 신설업체가 설립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최초결산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 상의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심사
- 최근연도 이후에 합병한 업체
 -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합병대상 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승)으로 평가하고,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시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보며, 최초 결산서는 합(승)하지 않음.
 -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는 최초결산서의 합(승)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봄

<신기술개발·활용실적>

- 건설기술 진흥법 제18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
 - 심사서류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
 -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
 - 활용실적은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발급된 증명서
 -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활용된 누계금액으로 평가

○ 공동수급체의 심사방법

- 기술능력 평가의 심사항목 중 현장대리인 평가는 대표사만 평가하며,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 평가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시공비율(복합업종의 경우 환산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합산 평가

-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사만 평가
- 기술개발 투자비율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복합업종의 경우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 증명서 제출방법

- 건설기술자의 종류와 보유 내용은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에 따르며, 해당 공종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등의 증명은 입찰공고일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받거나 동 협회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

4. 시공품질 평가

시공품질 평가 결과	평 점
A. 90점 이상	10
B. 85점 이상	9
C. 75점 이상	8
D. 75점 미만	7

- 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함
- 동 심사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해당 하는 기관에서 동일공종그룹<별표3>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품질결과 점수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평가,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평가결과를 적용
-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받은 동일업종(토목, 건축 등)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일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에는 ‘C’등급을 부여
-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다만, 2016.12.31.일까지는 대표사만 평가
-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하되, 최근 3년간 시공품질 결과가 없는 경우에 2016.12.31.일까지는 최근 5년간 평가결과를 적용

산정예시

적용례】 A업체가 최근 3년간 교통시설 관련 받은 시공평가점수 현황

공사명	공사규모(억원)	시공평가점수
OOOO 국도 확장공사	200	90
OOOO 교량 보강공사	300	85
OOOO고속도로 확장공사	500	95

$$\Rightarrow A\text{업체의 시공평가점수} = \frac{(200 \times 90\text{점}) + (300 \times 85\text{점}) + (500 \times 95\text{점})}{(200 + 300 + 500)} = 91\text{점}$$

5.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고
	등급	규모별 평점		
		추정가격 1,000억원이상	추정가격 1,000억원	
단일공종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 등	12	10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①하도급 비율	A : 40%이상 B : 30%이상	5 4	4 3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관급제외) 대비 하도급 할 공사(지급자제 제외)의 합계금액으로 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적격 심사기준”) <별표5>의 예시에서 (B/A×100)
②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 (B)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C)	A:77%미만 B:77%이상 ~ 80%미만 C:80%이상 ~ 82%미만 D:82%이상	3 4 5 6	2 3 4 5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적격심사기준 <별표5>의 예시에서 (C/B×100)
③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A: 10%이상 B: 10%미만	1.0 0.5	1.0 0.5	세부 평가방법은 적격심사기준 <별표 6-1>에 의함
계		12	10	

- 심사항목 ①, ②에 대한 평가방법

-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하도급 시공에 필요한 등록 등을 하지 아니

하였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하수급 예정자는 평가에서 제외

-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금액을 합한 금액이상이어야 함
- 심사항목 ③에 대한 평가방법
 -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별표 6-1>에 의함
 - 본 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자의 하도급 계약에 대한 직불실적에 한하여 평가
-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하도급대금직불실적평가와 관계없이 하도급대금직불계획이 있는 자가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비고”란에 하수급예정자와 직불계획금액을 표기하여 제출한 경우로서, 동 하도급대금직불계획금액이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의 20%이상인 때에는 0.5점을 가산 부여하여 평가(이 경우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점수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6. 사회적 신인도 평가 (최대 1점)

○ 재해율 (재해율 평가점수 - 산업재해발생보고위반건수 점수)

- 재해율은 3개년 가중평균*으로 산출

* [최근년도 환산재해율×0.5+최근년도 1년전 환산재해율×0.3+최근년도 2년전 환산재해율×0.2 (단, 최근년도 1년 전이나 최근년도 2년 전 환산 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

- 재해율 점수 평가산식

심사항목	배점 한도	평가방법	비 고
재해율 평가	0.5	• 평균 환산 재해율 0.2배 이하	
	0.4	• 평균 환산 재해율 0.4배 이하	
	0.3	• 평균 환산 재해율 0.6배 이하	
	0.2	• 평균 환산 재해율 0.8배 이하	
	0.1	• 평균 환산 재해율 1배 이하	
	0.0	• 평균 환산 재해율 1배 초과	

$$\frac{\text{3년간 기준평균환산재해율}}{\text{A업체 기준평균환산재해율}} \times \text{A업체 시공비율} + \frac{\text{3년간 기준평균환산재해율}}{\text{B업체 기준평균환산재해율}} \times \text{B업체 시공비율} \dots$$

* 재해율의 평가는 관련협회의 자료로 평가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한 점수를 재해율 평가점수에서 감점

위반 건수	감 점
1건	0.1
2건	0.2
3건	0.3
4건	0.4
5건	0.5

$$\text{A업체 위반건수} \times \text{A업체 시공비율} + \text{B업체 위반건수} \times \text{B업체 시공비율} \dots$$

* 산업재해 발생 보고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 (보고기한을 넘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 상호협력 점수

-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한 협력업자와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가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서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세부심사항목	평 가 방 법	배 점
상호협력평가	○평점 90점 이상인 자	0.5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0.4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0.3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0.2

○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 시공경험 우수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지역업체가 토목,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지역업체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국내 기

성실적총액이 동 업체의 최근 10년간 업종별(토목,건축) 국내 기성실 적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심사하는 방법에 의하며, 기성실적총액 은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해 확인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매출액 비중에서 ‘대표사 및 타 지역업체를 제외 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율의 합을 100으로 하여 그에 따라 환산한 새로운 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아래의 점수로 평가

<산식>

$$\frac{\text{A의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 총액}}{\text{A의 10년간 업종별 실적 총액}} \times \text{A업체 환산 지분율} + \frac{\text{B의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 총액}}{\text{B의 10년간 업종별 실적 총액}} \times \text{B업체 환산 지분율} \dots$$

<점수>

등 급	점 수
A. 40%이상	0.5
B. 35%이상	0.4
C. 30%이상	0.3

7.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 1개사 당 종합평가점수에서 2점씩 감점
-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토목과 건축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대표자를 포함)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의 범위 안에서 시공비율만큼 인정

4) 낙찰자 결정

- 종합평가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만, 종합 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할 경우 낮은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 고, 입찰가격도 동일할 경우는 추첨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

[별표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제1절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기준

1.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범위

- 가. [별표2]에서 정한 범위를 적용한다.
- 나. [별표2]에서 정한 범위가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 계약담당자가 입찰 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2.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 가. 실적증명서 양식은 본 기준의 [별지양식]에 따른 증명을 원칙으로 한다.
 - 1)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 2) 국외공사실적은 해외건설협회의 확인서나 증명서에 따른다.
- 나. 외국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 22조 제2항 제1호 바목에 따른 방법으로 하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 다. 하도급공사 : “가”와 “나”의 방법에 따라 증명하되, 원도급자의 증명을 추가해야 한다.
- 라. [별지양식]에 따른 실적증명이 곤란하거나 실적내용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가 일정한 서식을 정하여 실적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시공실적증명에 필요한 관련서류

- 가. 건축공사 실적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국내공사는 건축물대장, 인·허가 서류, 계약서 등)를 제출
- 나. 공동도급 실적은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시하고 사본을 제출한다.
- 다. 시공실적증명서와 관련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 번역과 공증 서류를 제출한다.

4. 시공실적 심사기준

가. 공통사항

- (1) 시공실적 증명서와 실제시공내용이 다른 경우 실제 시공한 내용을 기준으로 시공실적을 평가한다.
- (2) 심사 자료는 증명서 발급자가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명서 발급자가 발급한 증명서 내용이 본 심사기준의 증명방법과 상이하거나 실제 시공한 내용과 다르게 발급되거나 오류불명확 등이 있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를 한 뒤 보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실적은 심사에서 배제한다.
- (3)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실적인정기준과 부합여부를 확인한다.
- (4) 제출된 실적증명서등의 심사 시 설명·확인 등의 입증책임은 시공실적을 제출한 회사에 있다.

나. 시공실적 내용

- 1) 동일공사 실적규모 인정방법 : 1건의 동일한 단위구조물(체)로서 동 공사의 인정기준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1건이라 함은 단위 계약건 중 시공실적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각 단위구조물(체)을 말한다.
- 2) 동일공사의 실적금액 인정
 - 가) “1)”에 따른 실적인정 규모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실적금액으로 인정하며 도급자 설치 관급(지급)자재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준공금액·관급금액 중 미기재 하거나 불분명한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나) 국외공사인 경우에는 준공일 기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매매 기준율)로 환산한다.
- 3)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의 기본요소는 구성원 각각 모두 인정하되, 시공 규모·양 등은 출자비율을 곱한 실적으로 인정한다.
 - ※ 기본요소 : 경간·접안능력·높이·주차장·기계실 등을 말한다.
- 4) 분담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분담하여 시공한 내용대로 인정한다.
- 5)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라 시공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실적을 인정한다.
 - 가)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나)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종합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다)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 6)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 가)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 포함)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인 종합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 포함)의 실적은 하수급받아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나)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도급자는 전체실적을,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7) 연차별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 인정

동일구조물 공사를 발주기관이 연차별로 발주·계약하여 준공한 계속공사 경우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마지막 연차의 공사를 준공한 경우 전체 연차의 시공분 중 동일한 용도의 구조물(체)를 1건 실적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각 단위구조물(체)별로 공사규모와 준공금액이 명시된 시공실적증명서(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7-1호 서식)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8) 장기계속공사(계속비 공사)의 실적 인정방법

시공 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는 원칙적으로 전체공사(총 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하되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2”나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 중인 시설물은 그 부분에 대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9) 시공자격 유·무에 따른 실적 인정

가) 건설산업 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을 등록하고 시공한 공사실적만 인정한다.

나)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등록업종(면허) 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공사의 시공 당시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사항을 충족하고 시공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10)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가) 건설공사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합병 등을 한 자(업체)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합병 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자(법인)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분할은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3) 포괄적 사업 양수·도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11)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가) 시공 중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기 이전까지 시공한 부분은 변경되기 이전 시공비율을 곱하여 실적을 산정하고 변경된 이후의 시공부분은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실적을 산정한 후 합산한다.

나) 시공 중에 부도 등으로 구성원의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한 경우에는 잔여공사 중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제2절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 인정기준

1.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최근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실적 누계액의 증명서에 따라 평가한다.
2.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도 “1”과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자)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연도단위로 협회신고와 미신고가 혼재한 경우에는 협회 증명서상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다만, 1회계연도 내(內)의 실적에 대하여 관련협회에 실적 신고 시 누락 신고한 경우는 관련협회 증명서 실적만으로 평가한다.
3. “2”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발주기관(발주자)으로부터 직접 실적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 금액은 실적에서 제외한다.
4.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실적의 인정은 제1절 “4-나-5)”의 방식에 따라 업종실적을 인정한다.

제3절 실적증명서 심사기준과 발급요령

1.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증명서 심사기준과 발급요령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1, 1-1>을 준용한다.

[별표 2]

공종별 동일공사 범위

구 분 공 종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비 고
1. 교량		
A. 현수교, 사장교(경간 200m 이상 교량 포함)	○길이 200m 이상 A등급 교량 (단, 현수교, 사장교는 100m 이상)	
B.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아치교, 트러스교 (경간 200m 미만 100m 이상 교량 포함)	○길이 200m 이상 A·B등급 교량 (단, 현수교, 사장교는 100m 이상)	
C. 경간 50m 이상 교량 포함, 1,000m 이상의 일반교량(경간 10m 이상)	○길이 100m 이상 A·B·C등급 교량	
D. 500m 이상의 일반교량(경간 10m 이상)	○길이 100m 이상 A·B·C·D등급 교량	
2. 공항		
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10,000㎡ 이상의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공사	
나. 청사(여객화물 터미널)	○공항청사,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 터미널, 항만 및 종합여객시설로서 3,000㎡ 이상의 건축공사	
3. 댐	입찰공고에서 정한다.	
4. 에너지저장시설공사	입찰공고에서 정한다.	
5. 간척	입찰공고에서 정한다.	
6. 항만		
가. 계류시설	○30억 원 이상의 계류시설 ※준설, 매립 제외	
나. 외곽시설	○30억 원 이상의 외곽시설 공사 ※준설, 매립 제외	
7. 철도	○500m 이상의 철도·지상구간 지하철공사	
8. 지하철(도시철도)	○100m 이상의 지하구간 지하철공사	
9. 터널공사	○200m 이상의 교통터널공사(지하차도 공사 제외)	
10. 발전소	입찰공고에서 정한다.	
11. 쓰레기소각로	○소각 단위 30톤/일 이상의 쓰레기소각로 ○소각 단위 용량톤수 : 쓰레기 1일 소각톤수	
12. 폐수종말처리장		
가. 폐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하수종말 처리장	
나. 고도처리시설	○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하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수하수종말 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13. 하수종말처리장		
가.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하수종말 처리장	
나. 고도처리시설	○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하수종말 처리장 ○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수하수종말 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14. 준설	○20억 원 이상의 준설공사	
15. 관람집회 시설		
가. 공연장, 집회장	○연면적 3,000㎡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나. 관람장, 관람용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운동장·체육관	○연면적 3,000㎡ 이상인 관람장, 운동장, 체육관	
16. 전시시설(전시장)	○연면적 3,000㎡ 이상인 전시장	
17. 송전	입찰공고에서 범위를 정한다.	
18. 변전	입찰공고에서 범위를 정한다.	

[별표 3]

동일공종그룹 분류표

대분류(업종)	공사 구분(동일공종그룹)	비고
토목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	
건축	주거	
	비주거	